『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』 테크코어/테크스타트, 테크플래그십 시행 공고

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『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』 테크코어/테크스타트(추가모집) 및 테크플래그십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관심있는 기업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2일

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장

1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: 『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』

□ 사업목적: 특화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촉진

□ 사업내용: 진주시 소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원스톱 기술사업화(기술고도화, 시작(제)품 제작, 시험분석, 연구개발 등)

□ 사업구성

1 테크코어/테크스타트 추가 시행 ····· 10 Page 참조

2 테크플래그십(조인트테크업) 시행 ····· 13 Page 참조

3 테크플래그십(테크스케일업) 시행 ····· 14 Page 참조

□ 사업예산: 총 313백만원

□ 사업기간: **협약일로부터 ~ 2026년 12월 31일**

□ 지원방식: **바우처 방식*** (사업비가 선정기업에 직접 교부되지 않음)

1 테크코어/테크스타트업: 선정기업의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핵심기관이 재료구매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제공(납품)하는 기업/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

2 3 테크플래그십: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지원기관(공동연구개발기관)이 수행

- 조인트테크업 분야: 한국산업기술시험원 / 테크스케일업 분야: 한국세라믹기술원

□ 지원대상

공통 지원 조건 (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기업
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(기계, 조선, 자동차, IT, RT, BT, NT 등)
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(설립) 필수
※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관련 과제 우선 지원 예정

□ 사업요약

분야	주요내용		지원규모	
			분야별 금액	총액
Ⅰ 테크코어	사업화촉진 지원	·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**보유기술의 사업화**를 추진하는 특구 내 기업,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를 추진 중인 기업 지원 · 대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한 **기개발·휴면 기술의 사업화**를 위한 지원 · 연구소기업 설립 후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후속 지원	50백만원 (1개사 내외)	50 백만원
Ⅱ 테크스타트	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	· **핵심기술 확보를 희망하는 초기기업의** 연구·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화 모델 탐색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기반을 조기 확보하도록 지원 · 보유 및 이전 기술의 시연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사업화, TRL 제고 등 성장잠재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	25백만원 (3개사 내외)	75 백만원
Ⅲ 테크 플래그십	조인트 테크업	· 안티드론 분야 하드웨어(넷건 등) 기술개발 - 시스템 구성 요소 기술개발, 시제품제작 및 성능 검증	40백만원 (1개사)	88 백만원
		· 안티드론 분야 기능성 구조·소재(넷건 등) 기술개발 - 구조 안정성 및 기능 구현,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	45백만원 (1개사)	
		· 항공우주 분야 기술 컨설팅 - (시험평가) 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평가 지원 - (기술지도) 애로기술 전문가 기술 컨설팅	1.5백만원 (2개사)	
	테크 스케일업	· 특화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재·부품 기술을 활용하여, 기업 보유 제품의 성능 개선, 기술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	50백만원 (2개사)	100 백만원

※ 신청기업은 지원분야별 중복지원 불가

□ 민간부담금: 해당 없음

□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: 신청기업에 귀속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름

□ 기술료 징수: 해당 없음

※ 단, 지식재산권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신청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.(과학기술기본법 부칙<법률 제9992호, 2010. 2. 4.>(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) 및 국가연구혁신법 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)

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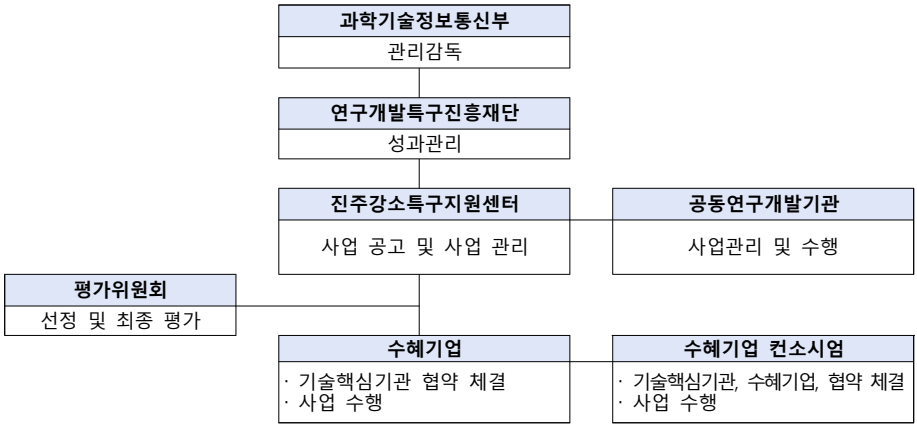

□ 추진절차

절 차	일 정	주요내용
사업공고	6월 12일 ~ 6월 22일	• 모집 공고
⇩		
사업신청 접수	6월 12일 ~ 6월 22일	•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, 사전검토
⇩		
평가 및 선정	6월 25일	• 평가위원회 개최, 지원 대상 확정, **수혜기업 개별 통보**
⇩		
협약체결	평가 후 별도 안내	•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
⇩		
사업수행	협약기간	• 사업수행
⇩		
중간 점검	9월 중	• 사업 추진현황 중간 점검
⇩		
사업수행 결과보고	협약기간 종료 후	• 결과보고 / 최종평가 / 연구개발비 정산

※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 지원제외대상 및 관련 법령

□ **지원제외 대상**

○ 2026년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R&BD사업,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제외 됨(중복수혜 불가)

○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: 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」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검토사항	내용
참여제한 해당 여부	• 신청기업, 신청기업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총괄(과제)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
공고내용과의 부합성	•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
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	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음 • 전문기관의 장은 **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**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,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함 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(성실, 불성실)"이나 "불성실수행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
의무사항 불이행 여부	• 신청기업, 공동연구개발기관, 총괄(과제)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	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, 신청기업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총괄(과제)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아니함 (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) 1. 기업의 부도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 3.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 5. **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**(자본

검토사항	내용
	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 등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 6. **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** 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심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근거법령	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.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○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관리치침 소급 적용

※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

4 평가절차

□ **평가일정 및 절차**

○ (평가일정) 2026년 6월 25일 (예정)

○ (평가절차)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(10~15분) 진행

- 테크플래그십(조인트테크업 – 컨설팅분야 서면평가 진행)

□ **평가항목(선정)**

구분	평가항목	비중(%)
추진계획 타당성	•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	30
	•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	
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	•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	40
	•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	
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	• 사업지원의 기대효과	30
	•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	
합 계		**100**

※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 동일점수기준: 선정평가 점수가 동일 시 1순위 특화분야 기업 2순위 경남진주강소특구 소재 기업

□ **평가방법**

○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발표평가로 진행함

○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
* 부득이 한 경우 사전협의에 의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

○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**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**로 분류함

○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
○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, 세부예산 및 연구개발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(경상국립대학교)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○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
5 신청방법 및 문의처

□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

○ 사업공고: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innopolisjinju.com)
진주시 홈페이지(https://www.jinju.go.kr)
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(https://www.gnu.ac.kr)
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tl.re.kr/)
한국세라믹기술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icet.re.kr/)

○ 접수방법: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E-mail 제출(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제출)

연번		제출서류	서식	비 고
필수	1	사업신청 공문	-	신청기업 자사 양식
	2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지원분야에 따라 양식 상이
	3	사업자등록증(원본대조필)	-	
	4	법인등기부등본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	-	법인인 경우
	5	최근 3개년도('23~'25년) 재무제표(원본대조필) 또는 회계감사보고서(원본대조필)*	-	
	6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	-	
	7	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** (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)	-	협약시 제출 가능
	8	의무이행서약서 - [첨부] NTIS 과제 차별성 검토결과지	서식 2호	
	9	평가 동의서	서식 3호	
	10	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	서식 4호	
	11	발표자료	-	조인트테크업 컨설팅분야 제외
해당기업	12	사업장 이전/설립 확약서	서식 5호	진주 외 신청기업 제출
	13	연구소기업 등록증	-	연구소기업인 경우 제출
	14	[사업화 촉진 분야]기술이전 계약서	-	
	15	[사업화 촉진 분야]기술이전 확약서	서식 6호	2026년 신규 이전 예정 기업

*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해당연도 자료만 제출(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제출 예외)

** 확인서 발급사이트: 중소기업확인서(http://sminfo.mss.go.kr), 중견기업확인서(https://mme.or.kr)

※ 주의사항: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,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 삭제 후 제출

※ 최종 선정 시 신청서류(원본)과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(2025년), 4대보험가입자명부(2025년) 제출 필수

○ **접수기간: 2026. 6. 12.(금) ~ 6. 22.(월) 16:00까지 [기한엄수]**

○ 접 수 처: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특화지원팀(innopolis@gnu.ac.kr)

○ 문 의 처

구분	연락처	E-mail	주소	기관
테크코어	055-772-4846	innopolis@gnu.ac.kr	(우)52725 진주시 동진로 33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(18동 303호)	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
테크스타트	055-772-4851			
조인트테크업	055-791-3593	ryankang@ktl.re.kr	(우)52852 진주시 충의로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	한국산업기술시험원
	055-791-3577	yh.cheong@ktl.re.kr		한국산업기술시험원
테크스케일업	055-792-2716	ginggiscan@kicet.re.kr	(우)52851 진주시 소호로 101 연구혁신본부 항공우주방산연구단	한국세라믹기술원

6 유의사항

가.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신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함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하며, 응하지 않거나 제출기일 경과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
- 신청서상 연락처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통지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은 선정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
다.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라.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을 철회(해약)하고 환수조치 할 수 있음
-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할 경우,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
- 중간점검(현장점검) 결과 사업추진이 현저히 미진하거나 사업 완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중앙정부·타 지자체 등 기업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을 하였을 경우(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)
- 연구개발사용이 부적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마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,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

바. 공동연구개발기관(대학, 정부출연연 등)의 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(3책 5공)에 적용받지 않으며, 참여인력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납부증빙이 가능해야 함

사. 선정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및 사업성과(사업화 성공여부, 매출액 상용화, 고용창출, 논문, 특허 등) 제고를 위한 성과보고회, 간담회, 만족도 조사, 언론보도, 홍보영상,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하여야 함

아. 과제 현황, 비용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, 실사, 결과 평가, 정산 등을 진행해야 하며, 선정기업은 자료 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

자.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경남진주강소특구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(매출, 고용, 투자)를 제출하여야 함

1 세부지원내용 : 테크코어 및 테크스타트업(추가모집)

1 지원개요

○ 사업목적: 특화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촉진

○ 사업내용: 진주시 소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원스톱 기술사업화(기술고도화, 시작(제)품 제작, 시험분석, 연구개발 등) 지원

2 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: 협약일로부터 ~ 2026년 12월 31일

○ 지원방식: 기술핵심기관 수행(**바우처 방식**)

○ 지원대상: 특화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및 연계 분야 기업단독 혹은 경상국립대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

공통 지원 조건 (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기업

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(기계, 조선, 자동차, IT, RT, BT, NT 등)

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(설립) 필수

※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관련 과제 우선 지원 예정

○ 지원분야

분야	주요내용		지원규모	
			분야별 금액	총액
Ⅰ 테크코어	사업화촉진 지원	·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**보유기술의 사업화**를 추진하는 특구 내 기업,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를 추진 중인 기업 지원 · 대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한 **기개발·휴면 기술의 사업화**를 위한 지원 · 연구소기업 설립 후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후속 지원	50백만원 (1개사 내외)	50 백만원
Ⅱ 테크스타트	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	· **핵심기술 확보를 희망하는 초기기업의** 연구·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화 모델 탐색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기반을 조기 확보하도록 지원 · 보유 및 이전 기술의 시연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사업화, TRL 제고 등 성장잠재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	25백만원 (3개사 내외)	75 백만원

○ 세부내용

Ⅰ [테크코어] 사업화촉진 분야

구분	주요내용
지원내용	• 대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한 시작(제)품 제작 지원, 시험·인증비용 지원,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사, 컨설팅, 마케팅 지원 • 기술검증, 시험분석평가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
지원요건	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•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내 기업 •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내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 예정 기업 • 연구소기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를 추진 중인 기업
지원형태	• 기업 + 경상국립대학교 • 기업 + 공공연구기관 • 기업단독 ※ 공동연구개발: 기업, 연구기관(대학, 출연(연), 전문(연)),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
지원규모	• 건당 50백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 지원
가점조건	• 2025년도 설립 연구소기업(2점) • 2025년도 기술이전 기업(1점) ※ 가점 적용 시 상위 점수 1개 항목 적용
필수조건	• 연구개발기간 내 신청과제 관련 지식재산권(특허권·실용신안권·상표권·디자인권 등) 출원 또는 등록 필수
기타서류	• 신규 기술이전 확약서[서식 5호] (해당 시)

Ⅱ [테크스타트] 혁신역량초기기업 지원 분야

구분	주요내용
지원내용	• 사업화, TRL 제고 등 성장 잠재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•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재료 지원 • 기술고도화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설계· 제작 지원 등
지원요건	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•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 기업 중 창업 7년 미만 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) • 진주시 내외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 중 창업 7년 미만 기업 ※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(설립) 필수
지원형태	• 기업단독
지원규모	• 건당 25백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 지원
필수조건	•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 필수 수행

□ **(Ⅰ, Ⅱ 공통사항)** 사업지원 결과물 제출

○ 사업 종료 시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 수행 결과에 따른 다음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

- 최종보고서 및 관련 증빙
- 매출증빙 (매출액 조사시 지원금액의 50%이상 기여율 반영)
- 신규고용증빙
-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실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등)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증빙

※ 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□ 세부지원분야별 지원내용(예시)

구분	세부지원분야	지원내용
연구시설·장비비	연구장비 활용	•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시설의 사용료 및 연구장비 임차료 지원
연구재료 구입비	연구재료 구입	•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지원 ※ 연구재료의 경우, **내용(사용)연수 1년 미만의 소모품에 해당**
연구재료 제작비	시제(작)품 제작	• 설계 혹은 제조(공정)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용 혹은 실제 제조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 제작 지원
소프트웨어 활용비	소프트웨어 활용비	• 사업화, 기술고도화 등 기술 역량 및 시제품 등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※ 소프트웨어활용은 연구개발기간 내 **임차**만 가능
외부전문기술 활용비 (연구개발비의 40% 이내 사용가능)	BM 컨설팅	• 시장환경 변화에 상응하고 보유기술·제품의 성공적 사업화 추진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, 재설계 등 컨설팅 지원
	디자인 및 마케팅	• 제품 카탈로그, 제품 매뉴얼 등의 오프라인 제작 지원
	시험/분석/인증	• 시험·분석 의뢰 및 평가, 인증 취득 등의 지원
지식재산 창출 활동비	지적재산권 확보	• 특허 출원/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조사 비용 지원 (단, 특허 출원/등록비는 지원불가)
	시장조사	• 사업화하고자 하는 제품의 파트너·바이어·원부자재공급선 발굴 조사, 해외시장 조사, 소비자 리서치, 경쟁제품 동향조사 등의 시장조사 지원

※ 상기 예시를 참조하여 세부지원분야는 신청기업의 사업목표에 맞게 변경 가능함

3 문의처

구분	전화번호	이메일	지원기관명
테크코어	055-772-4846	innopolis@gnu.ac.kr	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
테크스타트	055-772-4851		

2 세부지원내용 : 조인트 테크업

1 지원개요

○ 사업목적: 특화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 · 소재)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컨설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촉진

○ 사업내용: 진주강소특구 내 소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 · 인증(시험)분야 기술개발 및 컨설팅 제공

2 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: **협약일로부터 ~ 2026년 12월 31일**

○ 지원방식: 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 **(바우처 방식)**

○ 지원대상

공통 지원 조건 (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기업 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(기계, 조선, 자동차, IT, RT, BT, NT 등) 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(설립) 필수 ※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관련 과제 우선 지원 예정

○ 지원분야

구분	지원형태	세부내용	분야별 금액	지원 수
기술 개발	기업 단독	· 안티드론 분야 하드웨어(넷건 등) 기술개발 – 시스템 구성 요소 기술개발 –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	최대 40백만원	1개 사
	기업 단독	· 안티드론 분야 기능성 구조 · 소재(넷건 등) 기술개발 – 구조 안정성 및 기능 구현 –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	최대 45백만원	1개 사
컨설팅	기업 단독	· 항공우주 분야 기술 컨설팅 – **(시험평가)** 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평가 지원 – **(기술지도)** 애로기술 전문가 기술 컨설팅	1.5 백만원	2개 사

3 문의처

담당자명	전화번호	이메일	지원기관명
강봉석 팀장 (한국산업기술시험원)	055-791-3593	ryankang@ktl.re.kr	한국산업기술시험원
정영훈 책임연구원 (한국산업기술시험원)	055-791-3577	yh.cheong@ktl.re.kr	한국산업기술시험원

3 세부지원내용 : 테크 스케일업

1 지원개요

○ 사업목적: 진주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분야와 연계 가능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

○ 사업내용: 진주강소특구 내 소재·부품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제공

2 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: **협약일로부터 ~ 2026년 12월 31일**

○ 지원방식: 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 **(바우처 방식)**

○ 지원대상

공통 지원 조건 (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기업

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(기계, 조선, 자동차, IT, RT, BT, NT 등)

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(설립) 필수

※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관련 과제 우선 지원 예정

○ 지원분야

지원형태	세부내용	분야별 금액	지원 수
기업 단독	· 특화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재·부품 기술을 활용하여, 기업 보유 제품의 성능 개선, 기술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	최대 50백만원	2개 사

3 문의처

담당자명	전화번호	이메일	지원기관명
김만태 수석 (연구혁신본부 항공우주방산연구단)	055-792-2716	ginggiscan@kicet.re.kr	한국세라믹기술원